

TaxFlash

August 2025 / No. 11



Page 1

New tax rules on crypto asset transactions

Page 5

New rules on Article 22 Income Tax on gold bullion

암호 자산 거래에 대한 신규 과세 규정

암호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은 기존에 PMK-68¹에 명시되었으며, PMK-81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디지털 형태의 무형 상품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암호 자산 거래의 이전 과세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Flash No. 11/20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U-4²는 암호 자산이 디지털 금융 자산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GR-49³은 규제 권한을 상품 선물 거래 규제 기관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Bappebti*)에서 금융 서비스 감독 기관 (*Otoritas Jasa Keuangan/OJK*)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 (MoF)는 2025년 7월 28일에 암호 자산 거래의 과세 처리를 상기의 정의에 대한 변경에 맞추기 위하여 PMK-50⁴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Bappebti의 감독하에 상품으로 취급되던 것이 OJK의 감독하에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동일 자로 PMK-50에 의해 대체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PMK-81을 개정한 PMK-54⁵도 발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암호 자산의 정의를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변경하면서 암호 자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처리가 기존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부가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 MoF Regulation No.68/PMK.03/2022 ("PMK-68")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May 2022, which was adjusted into MoF Regulation No.81 Year 2024 ("PMK-81") dated 18 Octo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due to the Core Tax system implementation and last amended by MoF Regulation No.11 Year 2025 dated and effective from 4 February 2025
2. Law No.4 Year 2023 ("UU-4")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anuary 2023
3. Government Regulation No.49 Year 2024 ("GR-49")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4
4. MoF Regulation No.50 Year 2025 ("PMK-50") dated 28 July 2025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25
5. MoF Regulation No.54 Year 2025 ("PMK-54") dated 28 July 2025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25

그러나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같은 날짜에 PMK-53⁶를 발행하여 암호 자산의 전달에 관한 기준 부가가치세 처리를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PMK-81을 개정하였습니다.

MK-50는 부가가치세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1.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공급 - 암호 자산의 공급에 적용되며, 이는 이제 증권과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에 해당하는 공급 - 다음의 전달에 적용됩니다:
 - a. 전자 상거래 마켓플레이스 (*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PPMSE*)에 의한 암호 자산 거래를 위한 전자 채널 제공

이 서비스의 커미션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PPMSE(전자 상거래 마켓플레이스)에 의해 징수되며,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11/12의 다른 가치를 과세표준 (*Dasar Pengenaan Pajak Nilai Lain*)으로 곱하여 실질적으로 11%의 부가세율을 산출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발행된 커머셜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 인보이스와 동등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 b. 암호 자산 채굴자에 의한 암호 자산 거래 검증 서비스

등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암호 자산 채굴자에 의해 징수 및 납부되며, 이제 암호 자산 채굴자가 받은 암호 자산 가치, 암호 자산 시스템에서 받은 블록 보상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20\% \times 11/12 \times 12\%$).

암호 자산 채굴자는 소매점 (*Pedagang Eceran*) 방식에 따라 이 서비스의 전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인보이스에서 구매자 이름과 판매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의 부가가치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외화 또는 암호 자산으로 결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루피아로 변환하는 규칙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암호 자산의 가치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암호 자산 판매 가치를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PMK-50는 이전에 PMK-68에 명시된 암호 자산 선물 거래소가 이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 조직자로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자산(암호 자산 포함)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 및/또는 시설을 조직하고 제공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소득세 처리

암호 자산 판매자, PPMSE 또는 암호 자산 채굴자가 받은 또는 획득한 소득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암호 자산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

PMK-50는 암호 자산 거래로부터 암호 자산 판매자(판매자)가 얻은 소득이 제22조 최종 소득세(PPh 22 Final) 대상임을 규정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거래를 촉진하는 PPMSE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내 PPMSE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자)

a. 일반 PPMSE - OJK에 의해 허가됨

- 0.21% PPh 22 최종 세는 PPMSE에 의해 징수, 송금 및 보고됩니다.
- 면제는 판매자가 조세 협정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납세자인 경우 적용되며, 인도네시아가 과세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증명서를 PPMSE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제한적인 서비스 PPMSE

- 0.21% PPh 22 최종 세는 판매자가 스스로 송금하고 통합 월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합니다(이전에는 검증된 세금 납부가 세금 보고 역할을 했습니다).
- 제한 서비스 PPMSE는 전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암호 자산 거래를 촉진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2. 해외 PPMSE

a. PPh 22 징수자로 지정된 PPMSE

- 1% PPh 22 최종 세는 PPMSE에 의해 징수, 납부 및 보고됩니다.
- PPMSE가 세금 징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PPh 22 최종 세를 스스로 납부하고 통합 월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해외 소득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세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할 소득세에 대해 공제될 수 없습니다.

b. 지정되지 않은 PPMSE

- 1% PPh 22 최종 세는 판매자가 스스로 납부하고 통합 월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위의 처리는 또한 PPMSE 또는 암호 자산 채굴자가 다른 PPMSE가 제공하는 전자 채널을 통해 판매자로서 스스로에게 소득을 받거나 획득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거래 가치의 결정, 과세 사건, 통합 세금 원천징수/수집 영수증의 생성, 납부 및 보고는 대부분 이전 규정과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해외 PPMSE의 PPh 22 징수자 지정

해외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PPMSE는 MoF에 의해 PPh 22 징수자로 지정되어 암호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암호 자산 판매자가 받은 또는 획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납부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인도네시아 판매자와의 거래 가치가 있고/또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트래픽 또는 사용자 접근을 12개월 이내에 갖춘 경우.

- b) 세금 징수자로 지정되기를 선택한 경우 세금 징수자로서의 지정 요청서를 국세청 (DGT)에 제출합니다.

위의 a 항목의 기준 결정과 해외 PPMSE의 PPh 22 징수자 지정은 DGT에게 위임됩니다. DGT는 세금번호 및 PPMSE를 세금 징수자로 지정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 발행 후 다음 달의 시작일부터 지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PMK-50는 서비스의 인도네시아 판매자 또는 사용자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정의합니다:

-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경우(예: 사용자의 우편 주소 또는 청구 주소가 인도네시아에 있고/또는 웹사이트와/또는 세금 수집자가 제공하고/또는 결정한 시스템에서 등록할 때 선택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일 경우);
- b)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한 기관의 직불 카드, 신용카드 및/또는 기타 결제 채널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 c)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거나 인도네시아국가 코드를 가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PPMSE에 의한 암호 자산 거래에 대한 전자 채널 제공으로부터의 소득세

이 서비스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소득세율의 대상이며 PPMSE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PPMSE의 소득 범위에는 암호 자산 거래에 대한 전자 채널 제공, 입출금 서비스, 전자 지갑 간 암호 자산의 이전, 암호 자산 저장 매체 또는 전자 지갑의 제공 및/또는 관리, 및 암호 자산 관련 기타 서비스에 대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암호 자산 채굴자의 암호 자산과 관련된 소득세

PMK-50는 이제 이러한 소득이 일반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암호 자산 채굴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2026 회계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이러한 소득이 0.1% PPh 22 최종 세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암호 자산 채굴자의 소득 범위에는 암호 자산 시스템에서 블록 보상의 형태로 받는 소득, 거래 검증 수수료, 암호 자산 시스템에서의 기타 소득 및/또는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금괴에 관한 제22조 소득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7월 28일에, 재무부는 상품 인도, 수입 거래 및 다양한 다른 사업 활동에 대한 거래액으로부터 제22조 소득세 (*Pajak Penghasilan Pasal 22/PPh 22*) 징수에 관한 PMK-51⁷을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수입 거래와 특정 국내 인도를 포함하여 금괴에 대한 적용의 개정을 소개합니다.

PMK-51은 금괴 구매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금괴 사업 활동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기관)을 포함하여 PPh 22 수집자 목록을 확장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괴에 대한 PPh 22 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금괴의 수입

이 징수는 관세청에 의해 0.25%의 수입 가치로 수행되며, 수입자 식별 번호(*Angka Pengenal Impor*)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금괴 품목 유형 목록은 PMK-5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b. 허가 받은 금융기관에 의한 금괴 구매

PPh 22는 구매 시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 기준으로 0.25%의 비율로 금융기관에 의해 징수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IDR 10백만 미만인 거래에 대해 PPh 22 징수가 면제되며, 대규모 거래 금액의 분할 지급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서류(*Surat Keterangan Bebas/SKB*)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괴 거래에 대한 PPh 22 징수는 비최종적이며 수집된 당사자가 세금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재무부는 PMK-81을 개정하여 PMK-51로 대체된 관련 조항을 제거하는 PMK-54를 발행했습니다.

PMK-51과 별도로, 재무부는 금괴 판매에 관한 PMK-48⁹를 개정한 PMK-52⁸도 같은 날짜에 발행했습니다. 보석 또는 금괴 사업자가 금괴 판매 시 PPh 22를 징수해야 하며, PMK-52는 이제 허가 받은 금융기관을 보석 또는 금괴 사업자의 PPh 22 징수로부터 면제되는 당사자로 추가합니다.

7. MoF Regulation No.51 Year 2025 ("PMK-51") dated 28 July 2025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25

8. MoF Regulation No.52 Year 2025 ("PMK-52") dated 28 July 2025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25

9. MoF Regulation No.48 Year 2023 ("PMK-48") dated 28 April 2023 and effective from 1 May 2023

금괴 수입의 전환 규정: 수출을 위한 금 장신구 제작

PMK-81에 따르면, 수출 목적을 위한 금 장신구 제작 용도로 수입된 금괴에 대한 PPh 22 면제가 DGT에 SKB를 신청함으로써 허용됩니다. PMK-51에 따르면, 동 면제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MK-51은 이미 발행된 모든 SKB가 명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고 확정합니다. 더불어, 제출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SKB 신청은 PMK-81에 따라 계속 처리될 것이며, SKB가 발행되면 SKB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aka Putra raka.putra@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tonius Sanyojoya antonius.sanyojo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https://twitter.com/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5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